

EC의 반덤핑규정, 원산지 규정 현지생산부품 사용규정



Robert Cheeseman
영국상무부 불공정무역국장

1. 서론

먼저, EC와 영국은 외국인인 역내투자를 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EC가 채택하고 있는 교역정책이 그러한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영국은 GATT가 규정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기 위하여 반덤핑 규제와 같은 무역정책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하에서 내려진 EC차원의 모든 결정에 영국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적·경제적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EC의 제안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개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EC가 반덤핑관세 조치를 채택할 때의 의결방식인 조건부 투표방식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항상 EC의 전체적 의견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EC내에서 반덤핑문제는 조건부 과반수 체제하에 결정되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은 국가의 크기에 따라 일정수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영국의 투표권은 10이며, 한 제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총 76표중 54표를 얻어야만 한다.

2. 현지 생산부품 사용 의무

현지 부품사용 의무규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규정이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중 가장 간단한 것이다. EC차원에서는 현지 생산부품 사용 규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데,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지 부품 사용 협정은 투자자와 EC회원국 사이에 자발적 합의로서 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협정 체결 여부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달려 있다.

3. 원산지 규정

원산지에 대한 국제규정의 근간은 교도협약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EC는 1977년에 이에 가입하였다. EC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은 교도협약에 어긋나지 않으며, EC위원회 규정 802/68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상품이 최종 제조과정이 실시되었던 곳에서 입수되

편집자 주 : 보고는 '91. 6. 4~5일까지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이 주최한 유럽의 전자산업과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Robert Cheeseman 영국상무부 불공정 무역국장이 발표한 내용임을 밝힌다.

었거나, 원산지가 그 지역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수년에 걸쳐 EC는 많은 규정과 결정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원산지는 실질적인 최종 제조과정이 실시된 장소로서, 비차별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

원산지 규정은 특정상품이 반덤핑규제나 수량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원산지 규정은 역내 교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적 교역감시체제나 보호주의 조치가 남아있는 국가에 대해 적용된다.

1992년 유럽 단일 시장이 완성됨과 동시에 원산지 규정의 최종 사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다. 한편 원산지 규정 자체와 그 적용 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4. 반덤핑 규정

EC가 EC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법규를 설명하면 먼저, 문제가 되는 상품의 역내 생산업자들중 다수가 덤핑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게 덤핑조사 절차가 개시되어야 할지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우리 영국은 철저한 조사만이 사실을 밝혀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사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EC 공식 저널(관보)에 공고한 뒤, 자체 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활동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를 방문, 덤핑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또 덤핑에 의한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생산업자들을 방문하기로 한다.

위원회는 일차 조사를 마친뒤, 덤핑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각 회원국들에게 제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덤핑이 피해를 발생케 했는지, 그리고 반덤핑 조

치를 취하는 것이 EC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되는 것이다.

반덤핑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위원회는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친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관세는 최초의 경우, 단지 4개월간 부과될 수 있으나, EC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개월씩, 최고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하고 관세를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EC 각료회의에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각 회원국들이 주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는 각국이 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조건부 과반수 의결방식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각 회원국들은 덤핑행위가 존재하고,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있으며, 따라서 제안된 시정 조치 혹은 관세가 EC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위원회의 제안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이 조건들중 한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EC회원국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종종 설득에 성공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관련 각료회의 의사록에 우리의 반대입장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반덤핑 관세의 부과 외에도 반덤핑 케이스는 해외 수출업자가 가격인상 약속을 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이는 위원회가 그러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고, 또 이행여부를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덤핑 절차에 있어서 또 지적하고 싶은 점은 덤핑관세든 가격인상 약속이든, 특정 시정조치는 5년 동안 부과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1년뒤 재검토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문제의 상품이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수입업자는 지불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90년 말까지의 5년동안 총 170건의 반덤핑 조사중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된 것

은 19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4개월 동안 1건이 추가되었지만, 한국 관련 케이스가 모두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 사실 4월 현재 EC로 수입되는 한국제품중 반덤핑 시정조치를 받은 상품은 9건에 불과하다.

5. 덤핑 관세 우회규정

이 규정들은 1987년에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수의 일본회사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들로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이용, 역내에 현지 조립공장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규정의 취지는 역내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EC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요청에 의해, EC의 우회 규정을 심의하기 위한 GATT의 패널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본 규정이 GATT의 원칙과 상반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의 상황은 EC가 GATT 패널의 보고서를 수용하기로 동의 했으므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T의 반덤핑 규정의 적용이 보류된 상태이다.

제네바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별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에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또 GATT의 규정에 반덤핑 우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EC의 제도 보다는 미국의 체제가 채택될 공산이 높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EC위원회는, GATT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반덤핑 관세 우회 규정을 적용치 않고 있다. 덧붙여서, 현지 공장의 설치 혹은 확대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항의도 새로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일종의 반덤핑 관세 우회 조항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이 규정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시리라 보는데 앞으로 무엇이 결정될 것인지 몇가지 점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반덤핑 관세 우회 규정은 특정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 시정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역내 외국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번째 반덤핑 우회 규정에 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그 부품들이 EC를 원산지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현재의 EC의 관련 법안에는 해당 부품의 원산지가 EC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현재 법안은 반덤핑 관세를 면하려면 해당 제품은 가격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이 덤핑 해당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을 가상해 볼 때, 동 회사가 EC내의 동일 제품의 조립에 대한 반덤핑 우회 관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부품의 40% 이상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되는 40%를 EC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을 제외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제가 꼭 설명드려야 할 반덤핑 우회 관세 형태는 제품의 조립은 미국과 같은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뒤 역내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EC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품이 미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덤핑 해당국을 원산지로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EC는 제품 부품의 원산지를 역내 수입시의 상품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국가로부터 부품들이 수입된다면, 그 수입제품은 EC의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덤핑관세 우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끝내기에 앞서서, 원래의 반덤핑 관세가 수출업자에 의해 흡수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시정조치로서 관세의 효과가 없는 경우 본 위원회가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EC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법안에 근거한 덤핑 제소가 최근에 두 건이 있었는데 위원회는

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두건 다 한국수출업자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 한국기업들이 앞서 설명한 덤핑관세 우회 규정에 저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들 규정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6. 전망 및 지원

이제 저는 반덤핑 장치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한 두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GATT의 반덤핑 코드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일환으로서 제네바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작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회의 이후, 반덤핑 문제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리고 현재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언제 종결될 지 예측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덤핑 장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 분명하며, 본 장치를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본 장치는 앞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이상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견해는 이 규정이 건전한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GATT협상 과정에서 EC의 노선을 선정할 때 EC위원회에 영국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러분께서 영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제가 설명한 EC의 반덤핑 장치나 원산지 규정 때문에 주저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두 규정이 특정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

안되었기는 하나, 외국인의 역내 투자를 막고자하는 의도는 전혀없다. 우리의 투자 유치 기록을 조사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덤핑 규정의 복잡한 속성을 감안할 때, 이 규정들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유사한 덤핑상품을 EC시장에 이미 수출하고 있지 않는 한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전에 그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런던의 불공정 무역국은 투자 희망자들에게 기꺼이 조언을 제공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의견을 반덤핑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영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EC의 반덤핑법과 관련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와 접촉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영국에 이해 관계를 가진 회사들 중 반덤핑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에 직면한 회사들을 언제든지 지원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았다.

끝으로 저는 오늘의 강연이 귀하가 반덤핑과 관련한 EC의 절차 및 영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덤핑, 원산지 규정 및 현지부품 사용규정에 대한 EC의 입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한적이거나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